

## 창작공간 사용 매뉴얼

### 제1조(총칙)

한국문화예술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와 위원회의 창작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간에 시설·설비 대여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,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공연(행사) 준비 및 진행을 돕고, 위원회와 사용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며 위원회와 사용자들은 본 규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(창작공간의 정의)

- ①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
- ② 대학로예술극장 스튜디오 하늘
- ③ 아르코예술극장 연습실
- ④ 대학로예술극장 연습실
- ⑤ 아르코예술극장 로비
- ⑥ 대학로예술극장 로비
- ⑦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

### 제3조(사용 진행절차)

위원회 창작공간 사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용신청 → ② 사용심의, 통보 → ③ 사용계약금 납부 → ④ 사용료 완납 → ⑤ 창작공간 사용 → ⑥ 창작공간 퇴청 및 철수

### 제4조(사용의 정의)

- ① 사용이라 함은 '연습', '공연', '행사' 등을 위하여 창작공간의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내고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사용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위원회에 창작공간 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결정을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③ 위원회는 사용시설, 설비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5조(사용 신청)

위원회는 창작공간의 시설, 설비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 (이하"사용자")는 대관 시스템에서 창작공간 신청을 작성 제출하여 신청 한다.

### 제6조(사용 승인 및 계약체결)

- ① 단체는 '창작공간 사용신청서'를 대관 시스템에서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사용 승인 시 사용기간, 내용, 사용료를 확정하여 통지한다.
-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사용료를 확정 통지하며, 다만 신청 일정이 무리라고 판단될 때에는 제출한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승인 통지 후 7일 이내 사용 계약금(사용료의 10%)을 납부하여야하며, 사용료

잔금은 사용 초일 기준으로 14일 전에 납부한다. 납부기한일이 사용시작일 이후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승인받은 시간 외에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전 승인 없이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위원회는 추가 대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.

### **제7조(사용료)**

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 연습기간 중 추가로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대금을 납부한 후 사용한다.

② 사용시간은 오전(09:00-13:00), 오후(13:30-17:30), 야간(18:00-22:00)으로 구분하며, 추가 시간의 사용은 할 수 없다.

③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내용이 변경되고, 사용 일정이 변경되어 납부한 사용료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,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불가항력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(100% 반환)
2.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(100% 반환)
3. 창작공간 사용당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(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)

### **제8조(사용료 지연 납부, 사용 취소 시 불이익)**

①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

② 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차기 사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, 납부가 1주일 이상 지연될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사용계약 체결 전 취소 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.

### **제9조(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)**

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② 사용자의 형편상 공동주최, 주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일 중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용자의 설치물 (무대장치, 소품 등)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별도 활용할 수 있다.

### **제10조(사용일정 변경금지)**

사용자의 사용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정,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.

### **제11조(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)**

① 사용자는 위원회의 시설,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, 특별한 설비나 기재, 물품을 반입설치

활용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위원회로부터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받은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위원회가 철거 시 설치물에 손상이 발생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.
- ③ 사용자는 창작공간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창작공간 내에는 조리도구 및 조리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.

#### **제12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**

- ① 사용자는 위원회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위원회가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 그리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화재위험이 있는 화학류, 기름류 등 인화물질은 반입할 수 없다.
- ③ 사용자가 전항(①, ②)의 관리의무나 권고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 또한 사용자는 안전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사용이 종료되거나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중지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해체, 원상회복은 물론 부착 현수막,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. 종료일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, 위원회는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사용자는 창작공간 내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분실 시 책임 일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.

#### **제13조(취소, 해약 및 중지)**

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정서 발급에 따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, 해약할 수 있으며, 연습(행사)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- ①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② 사용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 내용과 다른 공연(행사)을 할 경우
- ③ 사용자의 공연(행사) 계획이 극장시설물의 손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
- ⑤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
#### **제14조(방화관리 의무)**

전열기, 용접불티, 가연성이 높은 물질, 폭죽, 화약류, 총포류의 사용이나 피난, 방화시설 폐쇄, 장애물 적치행위 등 피난 및 방화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5조(소정양식)**

사용에 필요한 서식을 위원회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.

#### **제16조(규정위반시의 책임)**

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준용기준)**
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, 위원회의 관련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